

가금류 농가 대상 AI 미신고·신고지연 조치사항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최근 일부 AI 발생 농장의 경우 의심축 신고가 지연되어 AI 바이러스 확산 요인으로 작용 우려 제기

*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의심사례 (별첨 1 참조)

- ☐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,

- ① 사료운반 차량 및 알 출하 차량 등의 지속적인 농장 출입에 따른 다른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
- ② 감염가축의 바이러스 배설로 발생농장의 심 오염에 따른 인근전파 위험도 상승

- ☐ 도축장으로 가축출하 시, 도축장 바이러스 오염으로 도축장을 통한 AI 전파 위험도 증가

2. 신고지연 및 미신고 판단기준

- ☐ 신고지연 * 아래 증상이 나타난 날 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

- ① (폐사율) 1일 평균* 대비 2~3배 높게 폐사율 증가

* 산란계 0.02%, 육계·육용오리 0.05~0.07%

- ② (산란율) 평균 산란율*에 비해 갑자기 3~5% 이상 산란율 저하

* (종오리) 80~85%, (산란계) 80% ;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

- ③ (임상증상) 줄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

□ 미신고

- 가축방역관이 현장 예찰과정에서 신고지연 기준 수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, 산란율 감소 또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

□ 방역 당국의 폐사 실태 등 현장 확인

- 농가 의심신고 후, 방역당국의 현장 확인* 시 신고일 기준 최근 수일간의 폐사율, 산란율 및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고 기록
 - 축주 등 농장관계자의 진술 내용은 참고하되 확인 필요

* 의심축 확인을 위한 시·도(시험소) 및 시·군의 시료채취 등 현장확인 또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의 해당 의심신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

3. 향후 조치 계획

□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

- 검역본부 등 방역당국의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해당 지자체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위반사례 면밀히 조사
- 위반사례 확인 시 경찰고발 등 법적 벌칙 규정 엄격 적용
 - *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법적 불이익 (별첨 2 참조)

□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평시 방역당국의 예찰(전화예찰 포함) 시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여부 지속 파악

□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적용

- 매몰비용 등을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조치

별 첨 1.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의심 및 신속신고 사례

2.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법적 불이익

별첨 1**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의심 및 신속신고 사례****① (경기 안성) 토종닭 (○○○ 농가, '17년 1월 신고)**

○ 폐사 경과 : 신고 당일 사육두수의 70% 이상 폐사

* 살아 있는 닭도 모두 활력저하 등 임상증상을 나타냄

** 잔반 급여 농가(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신고 여부 불명)

② (충남 아산) 산란계 (○○○ 농가, '17년 1월 신고)

○ 폐사 경과 : (신고 1일전) 500수 → (신고일) 500수

* 신고 당일 아산시에 갑작스럽게 폐사가 발생하였다고 신고

③ (전남 무안) 육용오리 (○○○ 농가, '17년 1월 일제검사 시 확인)

○ 폐사 경과 : (신고 2일전) 15수 → (1일전) 15수 → (신고일) 500수

* 3일 전부터 설사, 녹변, 폐사가 나타나고 신고 당일 500여수의 많은 폐사가 있었음에도 계열화사업자 일제검사 요원들이 농장방문 시 까지 신고하지 않음

④ (경기 화성) 산란계 (○○○ 농가, '17. 1월 신고)

○ 폐사 경과 : (신고 2일전) 30수 → (1일전) 300수 → (신고일) 1,500수

* 농장에서 폐사가 진행 중임에도 신고 2일전 발생농장에서 700m 떨어진 제2 농장으로 중추를 이동, 제2농장으로 옮긴 중추에서도 양성이 확인됨

⑤ (경남 고성) 육용오리 (○○○ 농가, '16년 12월 신고)

○ 폐사 경과 : (신고 2일전) 15수 → (1일전) 15수 → (신고일) 20수

* 평소 폐사가 없었으나 폐사가 나타나자, 경남 고성은 비발생 지역이라 A를 의심하지 못하다가 진입로를 공동 사용하는 인접 동일 계열 농가와 상의하여 신고

** 인접 동일 계열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, 정밀검사에서도 양성 판정(살처분 당시 임상증상 관찰되지 않음)

⑥ (경기 평택) 산란오리 (○○○ 농가, '16년 11월 신고)

○ 폐사 경과 : (신고 3일전) 15수 → (2일전) 15수 → (신고일) 110수

* (무기력 및 식욕부진) (11.25) 200여수 → (11.26) 400여수

** 정밀검사 결과 항체 검출(20수중 9수 항체검출)

***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로 신고한 잔반급여 농가

⑦ (세종) 산란계 (○○○ 농가, '16.11월 신고)

○ 폐사 경과 : 신고일 최소 4일전(4개동), 최대 7일전(1개동)부터
폐사 소폭 증가 신고 당일 폐사수 급증*

* (1동) (신고 4일전) 9수 → 12 → (2일전) 19 → 39 → (신고일) 30

(5동) (신고 7일전) 5수 → 16 → 15 → (4일전) 28 → 26 → 35 → 30 → (신고일) 45

○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상당기간 계란
생산이 가능한 주령의 닭을 도축 출하

* 도축장의 계류장 바닥 등 환경시료에서 농장과 동일한 유형의 바이러스 검출

[신속신고 사례]

□ (경남 양산) 산란계 농장(○○○ 농가, '16년 12월 신고)

○ 신고 경과 : (신고일 06시) 일부 닭 활력저하 → (당일 15시)

6수 기면(죽음) → (당일 16시) 시험소에 신고

※ 주변 5개 농가 예방적 살처분 실시, 전 농가 음성 판정

별첨 2**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법적 불이익****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신고 관련 벌칙 조항**

- 제11조(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)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 대상*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·군수 또는 가축 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* ①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, ②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

- 제56조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*

*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- 제57조(벌칙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·사료 판매자, 가축운송업자

②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보상금 관련 규정

- 관련 조항 : 법 제48조(보상금 등) 및 시행령 제11조(보상금 등)
관련 [별표 2]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·경감 기준

- [별표 2] 2호 라목.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감액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: 100분의 20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 : 100분의 40
 - 미 신고 : 100분의 60

- [별표 2] 3호 나목. 신속한 신고 시 보상금 감액의 경감 기준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 : 100분의 10